

교육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제 정 2015.10.6. 규정 제567호
1차개정 2017.6.19. 규정 제606호
2차개정 2020.9.15. 규정 제741호
3차개정 2022.8.12. 규정 제78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장학생의 선발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학금의 배정액 결정) ① 교내 장학금이 배정액은 당해 대학회 계 재원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결정한다.

② 교외 장학금의 배정액은 외부에서 지급하는 재원으로 한다.

제4조(종류 및 선발방법) ① 교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신입생 중 학업성적 우수한 사람
2.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조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원우회 활동하는 자중 그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해당 전공주임교수가 추천하는 사람
5. 박사과정생 중 연수휴직자로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하는 사람

6. 외국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사람
7. 복수학위과정 재학생 중 성적우수자 및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8. 해외 교육봉사 및 연수에 참여한 사람
9. 천재지변, 재난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
10. 기타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여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람

② 교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교외 장학재단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수혜자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했을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
2. 교외 장학재단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대학원장이 선정한다.

제5조(장학생 신청자격의 제한)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1. 당해학기 휴학자
2. 당해학기 자퇴자
3. 직전학기에 징계처분 받은 자
4. 수업연한 초과 이수자

제6조(배정시기) 교내 장학금의 배정시기는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장학생 및 지급금액의 확정) 교육전문대학원에서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된 지급원칙에 따라 매 학기마다 수혜자격 조건을 명시한

장학생 명단과 지급액을 명기한 장학금 지급 시안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장학금의 지급은 선발된 장학생의 명부에 의하여 현금 지급 또는 계좌입금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9조(이중지급) 각종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 이중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총장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등록금 감면 이외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741호, 2020.9.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787호, 2022. 8.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